

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

(보안사항)

1.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, 본 공사를 수행할 인력(협력사_자재납품, 시공 포함)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이력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2.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지시에 따라 본 공사를 수행하는 보안장소(작업실)을 지정하고, 동 작업실에는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만 출입토록 통제되어야 한다.
3. 계약상대자(협력사_자재납품, 시공 포함)는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,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.
4. 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외국업체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, 자료의 해외반출은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계약상대자(협력사_자재납품, 시공 포함)는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, 대여할 수 없다. 또한 전자자료인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6. 본 공사 준공 시, 모든 자료(전자자료 포함)는 일괄 수거하여 발주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완전삭제 하여야 한다. 또한 계약상대자는 그 이행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7. 도면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, 보관하여야 한다.
8. 발주자는 어느 때라도 계약상대자(협력사_자재납품, 시공 포함)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, 국가안보에 필요한 어떤 지시도 계약상대자에게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응해야 한다.
9. 특정지입자재 등 제작사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제작도서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제작도서 내 발주자의 명칭, 심볼 등 불필요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10. 해킹 등에 의한 자료유출에 대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,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11.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.